

#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 1. 대상 펀드

펀드명	설정액	발생일자
대신 SRI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ClassC	572,759,014	20160318
대신 SRI 증권자투자신탁제 4 호[주식]ClassAe	110,364,430	
대신 SRI 증권자투자신탁제 4 호[주식]ClassCe	134,449,247	

## 2. 발생일자 : 2016 년 03 월 18 일

## 3.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시행령제 93 조(수시공시의방법등)

제 3 항제 5 호에의거하여사모집합투자기구가아닌집합투자기구가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계속하여원본액이 50 억원미만인 경우그사실과해당집합투자기구가법제 192 조 2(투자신탁의해지)

제 1 항단서에따라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해지될수있다는사실을수시공시해야함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따라 1 개월공시 1 회시행 후해당사실이변경될 경우(원본액 50 억초과등) 추가공시

## 4.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 해당사항 없음